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56 발의연월일: 2020. 9. 2.

발 의 자: 송옥주·장철민·민병덕

안호영 · 오영환 · 인재근

박홍근 • 이광재 • 윤미향

우원식 • 기동민 • 용혜인

송재호 · 양정숙 · 맹성규

남인순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에 한정하여 사업주 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비원 등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에 고객의 폭 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함.

이에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및 상담지원의 사후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1

조).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를 "고객응대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 대근로자에게"를 "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는 중에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객응대근로자"를 각 각 "근로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u>고객응대 근로자</u>
② <u>근로자가 고객을 응</u>
대하는 업무를 하는 중에 고객
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	③ 근로자
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u>고객응대근</u>	<u>근로자</u>
<u>로자</u> 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	
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	
는 아니 된다.	